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임태근 의원 대표발의)



성 북 구 의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임태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1년 5월 27일

발 의 자: 임태근 의원 외 8명

김오식, 김일영, 박학동,
윤정자, 임태근, 임현주,
정기혁, 한건희, 한신

1. 제안이유

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
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여성 1인 가구 등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
있도록 함 (안 제18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 산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1. 5. 28. ~ 2021. 6. 4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방범시설 설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18조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대상지 내의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기준,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방법시설 설치 지원)</u> ① <u>구청장은 제18조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대상지 내의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기준,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</u>